

「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0월 19일

국토교통부장관

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- 위원회 회의소집, 심의 등 세부절차를 정하기 위해 위원회 운영 세칙을 행정규칙(국토부 고시)으로 제정·시행 중('18.4~)
- 제3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구성을('22.7.) 계기로, 전문성 있는 심의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·기능 개편안과 이를 반영한 운영규정 개정안 마련

2. 주요내용

- (회의 운영) 위원회 개편안에 따라 심의를 정례화 할 수 있도록 분기별 정기회의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
- (현장조사) 시범도시, 규제특례, 스마트도시계획 등 지자체와 연관된 정책·사업을 전문적으로 심의를 위해 현장조사 규정 신설

- (전문위원회) 기존 운영규정에는 전문위 관련 조항 부재하여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위원회 소관 업무, 구성원, 운영 방법 등 세부사항을 신설하고 구체화
- (간사) 기존 운영규정에는 각 간사 업무에 대한 체계적 규정이 없어 행정상 착오 우려되어 간사별 업무를 구체화하고 전문위 간사도 선임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molit.go.kr>→정보마당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성명(기관, 단체의 경우 그 기관, 단체명과 부서명, 직급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나.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이유)

개정안	수정안	의견

다. 의견 보내실 곳

- 1) 소속 :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
- 2) 주소 :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정부세종청사 6동)
- 3) 전화/팩스 : 044-201-4879/ 044-201-5569
- 4) 이메일 : k20011226@korea.kr